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1나6960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1나6960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9 선고 2019가단518224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기

담당변호사 이종호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한

담당변호사 김유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동

담당변호사 홍성만

변론 종결2022. 4. 19.

판결 선고2022. 5. 17.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9. 선고 2019가단518224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9. 1.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9. 1. 15. 접수 제69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재산분할비율의 상당성 등에 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1)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는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2. 4. 27. 이 법원에 '추가 증거를 제출 또는 신청하겠다'고 주장하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 전에 피고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피고가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하여 다수 판결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그 주장·증명의 대상으로 삼는 증거가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적 요증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44115 판결 참조), 위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판장판사김창현

판사강영훈

판사노태헌

별지

1)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C의 다른 채권자인 K이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2019. 1. 15.자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3162)를 하였고, 위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와 C의 혼인기간이 14년 이상으로 짧지 않고 C이 경제 활동을 전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와 C이 혼인기간 중 이룩한 공동재산 중 각 1/2 상당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을 이전한 것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재산분할로서 전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20나2017717)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도 제1심 법원과 같이 위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제1심 판단도 위와 같다[한편 K이 제기한 위 사해행위취소 사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한 후 상고심 계속 중 K에게 피보전채권액(4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대부분인 3억 5,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함으로써 K이 소를 취하하였다].